



inu_humanrights

평등한 인권 평등한 캠퍼스



INU 인권센터
Human Rights Center

INU 인천대학교

학과 차원의 인권침해 30 예문 | 내가 인권침해를 했을 때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

주변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직장 내 괴롭힘 | 2차 피해 예방

인권침해 야청

신고사건 처리과정 | 인권침해 유형

인권센터 소개 | 인권센터 주요 사업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안내

이용대상 인천대학교 구성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

이용시간 * 학기 중 : 월~금 09:00~18:00
(방학중에는 1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음)
* 점심시간 : 12:00~13:00

이용방법

- 🏠 전화 또는 이메일 예약 후 방문
- ☎ 032) 835-9806~8
- ✉ inuhrc@inu.ac.kr



INU 인권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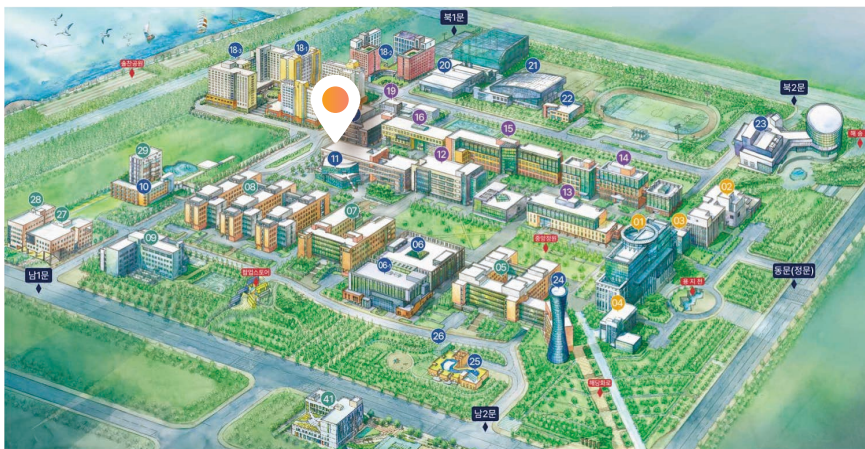


inu_humanrights

평등한 인권 평등한 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복지회관(11호관) 401호



INU 인권센터
Human Rights Center

INU 인천대학교

CONTENTS

- 1 인권센터 소개
- 2 신고사건 처리과정
- 3 인권침해 유형
- 4 직장 내 괴롭힘
- 5 2차 피해 예방
- 6 주변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 7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
- 8 학과 차원의 인권침해 등 예방
- 9 내가 인권침해를 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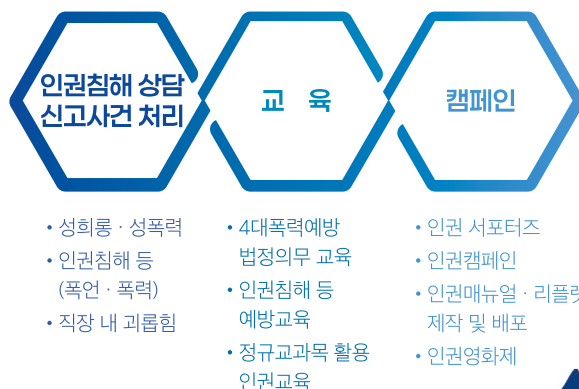


인권센터 소개

인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의 인권을 보호 · 구제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캠퍼스를 만들고자 INU 인권센터를 2018년 8월 1일에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 2021년 3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인권센터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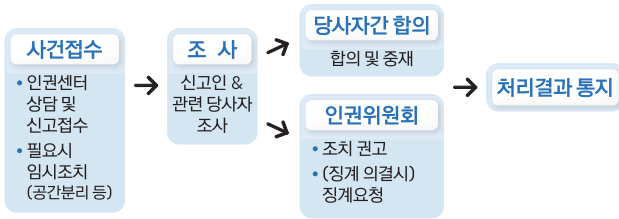


인권침해란?

성희롱 · 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및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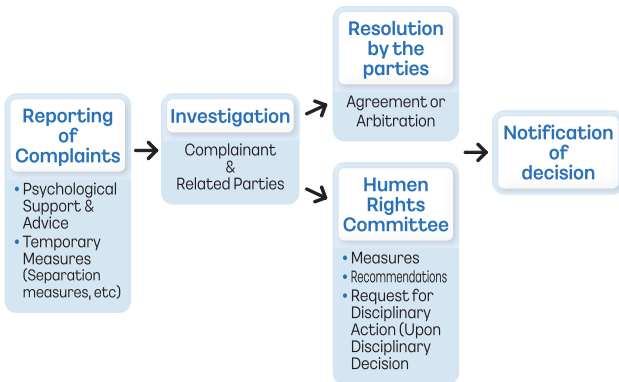
사건처리절차



신고사건 처리기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Case handling Procedure



Processing deadline

In principle, it should be process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and it can be extended within one month.

인권침해 유형

성희롱

*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MT 술자리 게임 중 러브샷 5단계, 욕설 및 음담패설, 이성 간 과도한 스킨십
출처 : 중앙일보 2025. 4. 16. 기사
- 카톡, 이메일, 문자, SNS, 익명커뮤니티 등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고, 욕설, 외모평가 등의 발언을 하는 것
출처 : 한국대학신문 2023. 10. 17. / 동아일보 2023. 10. 16. 기사

성폭력

*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라도 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을 반복하거나, ② 성적인 이미지나 글을 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성폭력이 될 수 있음

교수-학생 간 성폭력

-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행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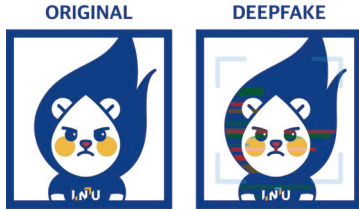
학생-학생 간 성폭력

-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MT, 술자리, 동아리, 자취방 등 공공 장소를 포함하여 발생하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됨

인권침해 유형

디지털 성범죄

-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촬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비대면 수업 중 화면캡처, 채팅창을 통한 부적절한 언어사용, 외모평가, 불법 이미지 공유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스토킹

-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컴퓨터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

• 초대받지 않고(알리지 않고) 학교나 집에 나타남
 • 나의 상사나 교수에게 전화함
 • on-off 라인에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림
 • SNS나 위치추적 앱 등을 이용해 감시함
 • 원치 않는 선물, 꽃, 문자, 이메일, 음성메시지를 보냄
 출처 :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2020) 캠퍼스 안전 데이트 안내서.

데이트 폭력 (교제폭력)

- *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이별 후 발생하는 폭력범죄 등)으로, 친밀한 관계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팅, SNS, 앱 등을 통해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의미함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함
-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함
- 수십 차례가 넘는 전화를 함
- 무엇을 하든 허락을 받으라고 함
- 옷차림을 제한함
- 내가 하는 일이나 관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경제적 폭력

-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없고를 정해주거나 나의 은행계좌를 공유하자고 강요함
-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만 나는 똑같이 쓰지 못하게 함
- 나의 사유재산을 숨기거나 훔침
- 선물이나 밥을 사고 그 대가를 원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이용함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2020) 캠퍼스 안전 데이트 안내서.



직장 내 괴롭힘

-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주요 행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차 피해 예방

-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등)이 1차 피해 이후 문제제기 및 사건 처리 과정과 이후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업무상 입는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

- *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인천대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동일 사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의 주체 및 행위

주 체	구체적 행위
행위자, 동료 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기관장, 상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고를 만류,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 사건을 임의로 조사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사건처리 • 사건당사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 피해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합의 강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나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업무담당자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조사자, 심의·의결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조사내용 및 당사자 개인정보 등의 노출행위

주변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①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어. 옆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②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왜 저항하지 않았니?”, “거기를 왜 따라갔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행동을 판단하는 질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③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가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강간 등의 피해라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합니다.
-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었던 옷이나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④ 관련 기관을 안내합니다.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U인권센터 032-835-9806~8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1366 / 02-735-8994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582-1170 •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032-280-5678 • 여성긴급전화 인천센터 032-1366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 상담소 032-451-4091~5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2-865-1365 •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⑤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 소문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뒷말, 비난 등은 2차 가해가 되어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대처 방안

인권침해

1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교내 인권센터(032-835-9806~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 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행위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4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폭력 및 성폭행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2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의 교내 인권센터 또는 교외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조(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 센터로 연락합니다.



교내 관련기관

- INU인권센터 032-835-9806~8

교외 관련기관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 / 02-735-8994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582-1170
-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032-280-5678
- 여성긴급전화 인천센터 032-1366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 상담소 032-451-4091~5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2-865-1365
-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③ 지인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④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⑥ 사건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고소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과 차원의 인권침해 등 예방



- * 신입생 O.T 및 학생회 대상 인권침해 등 예방 교육
- * 학내 동아리 단위 교육
-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학과 및 단과대학 단위 학사일정에 맞춘 예방프로그램 제공
- * 자기설계세미나 등 교과과정 연계 교육
- * 학과 단위 인권영화제 실시
- * INU인권서포터즈

내가 인권침해를 했을 때

- * 자신의 언행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 인지하는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2차 피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인권교육 기회를 찾는 등 재발방지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